

의안번호	2200174
의 퇴 인	서영교의원
회 답 일	2024.7.4.
추계번호	24E052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5년 1조 7,760억원 등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년간 총 7조 9,763억원(연평균 1조 9,94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4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(안 제59조)	-	-17,760	-19,141	-20,629	-22,234	-79,763	-19,94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 (근로소득세액공제)	- 산출세액 기준 상향 (현행 → 개정안) 산출세액 130만원 → 산출세액 200만원 - 공제한도 확대 (현행 → 개정안) 총급여 3300만원 이하 (74만원 → 100만원), 총급여 3300~7000만원(66만원 → 85만원), 총급여 7000만원 ~ 1.2억원 (50만원 → 60만원)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9조(근로소득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,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어 2025.1.1.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
 - 동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, 동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경우부터 적용
 - 근로소득세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수가 다음연도 연말 정산시에 전액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
- 국세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
 -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21~2022년 총급여 구간별 납세인원 증가율과 같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추계방법

- 국세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신고자료를 활용해, 결정세액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총급여규모별로 1인당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액을 추계한 후 각 구간별 인원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 추계
 -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2023년부터 시행된 근로소득세액공제 개정사항 및 과세표준 구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도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세수효과 추정
 - 2022년말 세법개정으로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(1,200→1,400만원, 4,600만원→5,000만원)하면서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 1.2억원 초과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함
 - 총급여 구간별 납세인원은 2021~2022년 각 구간별 인원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2]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세수효과, 2022년 귀속 기준¹⁾

(단위: 백만원)

	1인당 총급여	1인당 산출세액 ²⁾	1인당 근로소득세 액공제 (개정전)	1인당 근로소득세 액공제 (개정후)	△1인당 근로소득세 액공제	총 세수효과
합계	55.628	3.8	0.66	0.85	-0.19	-1,529,071
1천만 이하	4.615	0.3	-	-	-	-
1.5천만 이하	14.295	0.3	0.17	0.17	0.00	0
2천만 이하	17.647	0.4	0.24	0.24	0.00	0
3천만 이하	25.099	0.7	0.37	0.37	0.00	0
4천만 이하	34.876	1.3	0.72	0.88	-0.16	-365,999
4.5천만 이하	42.447	2.0	0.66	0.92	-0.26	-255,642
5천만 이하	47.460	2.5	0.66	0.88	-0.22	-192,818
6천만 이하	54.850	3.3	0.66	0.85	-0.19	-265,557
8천만 이하	69.212	4.9	0.66	0.85	-0.19	-343,217
1억 이하	88.928	8.2	0.50	0.60	-0.10	-105,838
2억 이하	129.557	18.1	0.20	0.20	0.00	0
3억 이하	236.749	55.1	0.20	0.20	0.00	0
5억 이하	372.962	104.9	0.20	0.20	0.00	0
10억 이하	664.572	219.1	0.20	0.20	0.00	0
10억 초과	2051.499	818.0	0.20	0.20	0.00	0

주: 1) 결정세액이 있는자 기준

자료: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, 소득세수는 귀속기준으로 향후 5년간 총 10조 3,728억원(연평균 2조 74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제도 시행 이후 연말정산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됨에 따라, 2024년 귀속소득부터 개정세법이 적용

[표 3]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의 세수효과, 귀속기준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소득세	-17,760	-19,141	-20,629	-22,234	-23,964	-103,728	-20,746

-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, 소득세수는 징수기준으로는 향후 5년간 총 7조 9,763억원(연평균 1조 9,94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반영

[표 4]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의 세수효과, 징수기준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소득세	-	-17,760	-19,141	-20,629	-22,234	-79,763	-19,941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5년 1조 7,760억원 등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년간 총 7조 9,763억원(연평균 1조 9,94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4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(안 제59조)	-	-17,760	-19,141	-20,629	-22,234	-79,763	-19,941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강민지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민지	02-6788-4746	min1231@assembly.go.kr